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42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 15.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2,280,280원, 지방교육세 54,017,7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8

원, 농어촌특별세 24,90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집합투자업자'라고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납입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고, 2012. 11.경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나.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2012. 11. 30.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납입받은 집합투자재산으로 [redacted]시 C, D,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취득세 등 세액의 30%를 감면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8

그 후 2012. 12. 20.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지 않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582,280,280원, 지방교육세 54,017,740원, 농어촌특별세 24,903,730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6.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2. 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29.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만 하고 등록을 마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등록신청이 수리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0569호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0552호 판결).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의 1.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8

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8

[별지]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끝.